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진흥청에 청년농업인 육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지도사 1명)을 증원하고,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에 디지털농업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 밭농업기계화공학 연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농업인안전보건 관리 연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식량과학원에 국산 밀 가공 개발 연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동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정원 3명(5급 1명, 연구사 1명, 지도사 1명)과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정원 9명(6급 2명, 7급 1명, 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4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농촌진흥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345”를 “343”으로 하고, 일반직 계 “344”를 “34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33”을 “331”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900”을 각각 “898”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882”를 “88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촌진흥청 정원 3명(5급 1명, 연구사 1명, 지도사 1명)과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정원 9명(6급 2명, 7급 1명, 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농촌진흥청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45</u>	<u>343</u>	-2
•	•	•	
•	•	•	
일반직 계	<u>344</u>	<u>342</u>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33</u>	<u>331</u>	-2
•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9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900</u>	<u>898</u>	-2
일반직 계	<u>900</u>	<u>898</u>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882</u>	<u>880</u>	-2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2) 205 - 2344